

지식산업센터 []신설 []승인 (신청서) []증설 []변경승인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------	-----	------	-------

신청인	회사명		
	(전화번호: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			

지식산업 센터개요	소재지(명칭)			
	용도지역		지목	
	주요 유치업종	공장 부지 면적(m ²)	제조시설 면적(m ²)	부대시설 면적(m ²)

구분	부지 면적 (m ²)	건축 면적 (m ²)	분양면적			
			공장시설 면적(m ²)	기타산업시설 면적(m ²)	지원시설 면적(m ²)	공동시설 면적(m ²)
사업개요	공장동					
	부대동					
투자액:		평당 분양예정가격:		유치업체 수:		

변경승인 신청사항	
--------------	--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(설립변경)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(설립변경)을 승인합니다.

※ 의제처리되는 인·허가 및 승인조건: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조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첨부서류	1.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.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·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처리기간 20일 (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·군수 또는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)	수수료 없음
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토지 또는 건물(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의 등기사항증명서		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